

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강동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78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4일
발 의 자 : 강동길, 여 명 의원(2명)
찬 성 자 : 김정태, 김제리, 봉양순,
송재혁, 이광호, 이승미,
이태성, 이호대, 임종국,
채인묵, 최 선 의원(11
명)

1. 제안이유

- 성인기에 사회로 이행되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점차 고립되어 가는 고립청년들이 급증하고 그 연령대 또한 높아지고 있음.
-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고립청년은 기존 복지정책 및 청년정책에서 소외되며 분절된 서비스 체제로 사각지대로 남아있음.
-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심리·사회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상당히 복합적으로 나타나기에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구축이 시급함.
- 이를 통해 이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(안 제2조).
- 나.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.
- 다. 고립청년 발굴 방법에 대해 규정(안 제6조).
- 라.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(안 제8조).

마. 민간 전문가 활용 근거를 마련(안 제9조).

바.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(안 제10조).

사. 관련기관·단체와의 협력에 대한 근거를 마련(안 제11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청년기본법」, 「사회보장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가는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청년"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
2. "사회적 고립청년"(이하 "고립청년"이라 한다)이란 사회적·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,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조직, 인력,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,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1.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
2.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3.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
4.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
5.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립청년과 그 가족,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고립청년 발굴) ① 고립청년 발굴의 주체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,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·고용·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실태조사 등)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·관리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고립청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

2.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·정서 지원사업

3. 고립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

4.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

5.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

6.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9조(민간전문가 활용) 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·법인·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청년 지원 관련 기관 등을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1조(관련기관·단체와의 협력 등)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,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